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법률 제21741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의7 신설)

-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함.
-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구체적인 혜택처 범위, 소지자의 혜택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3)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의 대상, 내용, 환류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영 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5조 개정)

- 1)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 위임위탁
-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임·위탁 하도록 규정함.

다.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6조의2 개정)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7부터 제41조의14까지를 각각 제41조의8부터 제41조의15까지로 하고, 제4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7(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의9제1항에 따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지역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한다.
2.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14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다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할 수 있다.
3. 디지털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4.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가입자의 혜택 제공 및 법 제47조의9제3항에 따른 실태평가 및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 내

역(소지자,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소지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9제2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혜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역에 소재한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혜택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혜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지자에게는 제1호의 관광 및 문화 시설 이용 시 지역 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소지자는 적립된 포인트는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현금받을 수 있다.

5.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혜택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의9 제3항에 따른 실태 평가를 다음 각호에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1. 실태 평가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디지털관광주민증 가입자의 연도별 증감 현황, 체류 실적, 혜택 내용, 이용 내역, 이용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실태 평가의 시기 및 내용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을 위한 심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가. 신청서류의 접수·확인

나.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 자료 작성

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 업무

6. 법 47조의9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제66조의2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법 제47조의9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활용, 연계 사업의 발굴·운영 및 실태 평가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7(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의 9제1항에 따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u> <u>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지역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한다.</u> <u>2.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14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다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할 수 있다.</u> <u>3. 디지털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u>

급한 것으로 본다.

4.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권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
지털관광주민증 발급, 가입자
의 혜택 제공 및 법 제47조의9
제3항에 따른 실태 평가 및 부
정 이용 방지를 위해 가입자
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 내
역(소지자,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으
며, 소지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
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9제2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혜택은 다
음 각 호를 포함하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역의 여건에 맞
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역에 소재한 숙박시설, 음
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3호
에 따른 문화시설 중 문화체

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혜택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혜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지자에게는 제1호의 관광 및 문화 시설 이용 시 지역 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소지자는 적립된 포인트는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거

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
급받을 수 있다.

5.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 지방
자치단체는 혜택을 적극 발굴
하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47조의9 제3항에 따른 실태 평
가를 다음 각호에 내용을 포함
하여 시행한다.

1. 실태 평가는 디지털관광주민
증 발급에 참여한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하되, 디지털관
광주민증 가입자의 연도별 증
감 현황, 체류 실적, 혜택 내
용, 이용 내역, 이용 만족도 등
을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실태 평가의 시기 및 내용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
가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의2.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

1의2. (생략) 2. ~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② ~ ⑦ (생략)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	<u>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을 위한 심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u> <u>가. 신청서류의 접수·확인</u> <u>나.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 자료 작성</u> <u>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 업무</u>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u>법 47조의9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u>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의3. (생략)

<신 설>

6. · 7. (생략)

② ~ ⑥ (생략)

[illegible]

1.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법 제47조의9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활용, 연계 사업의 발굴·운영 및 실태 평가에 관한 사무

6.·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2854